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자의 겸직 관련 설명

SUMMARY

한국 상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에 다른 2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직을 상실합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코웨이의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한 이남우 후보자는 2020 년 3 월 31 일부터 현재까지 (2023 년 3 월의 2 주 제외) 거의 5 년 동안 한국 상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여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했었거나, 현재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우 후보자는 코웨이의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확인서에 관련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서명했고,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를 코웨이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국 상법에 따라 이남우 후보자의 코웨이 사외이사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남우 후보자의 코웨이 사외이사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확인서의 허위 진술, 그리고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남우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주 여러분께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모든 주주 제안에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I.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 겸직 관련 사실관계

코웨이(주)(이하 “당사” 또는 “코웨이”)의 소수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 회사(이하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으로 선임 제안(이하 “본건 주주 제안”)한 이남우 후보자는 후보자 제출 확인서 (별첨 ‘이남우 후보자 겸직 관련 증빙’ 2. 참고) 및 얼라인파트너스 2025. 2. 14. 공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2025. 2. 18. 일부 정정, 이하 “본건 참고 서류”

공시”)상 상장회사인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고,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입니다.

이남우 후보자가 당사에 제출한 위 확인서에서도 겸직 내역을 위 두 회사로 제시하면서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는 2월 사임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당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하고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애자일소다 2024. 3. 29. 공시 사업보고서 및 (주)애자일소다 2025. 2. 21.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남우 후보자는 2020. 3. 31. 비상장회사인 (주)애자일소다의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도 재직 중이고, 임기만료일은 2026. 3. 30.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주)에이비엘바이오 2025. 2. 21.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남우 후보자는 2017. 10. 18.부터 (주)에이비엘바이오의 감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2019. 3. 21.부터 2023. 3. 10.까지 동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에서 확인된 이남우 후보자의 타회사 이사, 감사 겸직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7.10.18.~	2019.3.21.~	2020.3.30.~	2020.3.31.~	~2023.3.10.		2023.3.24.~	2024.2.22.	~2024.3.28.	~2025.1.29.	~2025.3.24.*	~2026.3.
ABL 바이오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한솔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									
애자일소다				감사								
SBS							사외이사, 감사위원					

* 이남우 후보자 제출 확인서상, SBS 이사직은 2025. 2.말 사임 예정으로 기재하였음

II.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위 기준에서 이남우 후보자의 그간의 타회사 이사·감사직 겸직 내역을 보면, (i) 2019. 3. 21. (주)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임 후 2020. 3. 30.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임한 다음, 연이어 2020. 3. 31. (주)애자일소다 감사로 취임함으로써 2020. 3. 31.부터 위 2개 상장회사 (주)에이비엘바이오와 한솔홀딩스(주)의 사외이사직의 법령상 결격사유를 발생시켜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2023. 3. 10. (주)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사임을 하기까지 약 3년간 위 3개 회사의 겸직 활동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ii) 2023. 3. 10. (주)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직을 퇴임 직후 불과 2주 뒤인 2023. 3. 24.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에 취임하여, 당시 겸임 유지 상태였던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 자격에 대해서 또다시 법상 결격사유를 발생시키고 현재까지 2년 가까운 기간을 이러한 위법한 겸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요컨대 이남우 후보자는 2020. 3. 31.부터 현재까지 단 2주를 제외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령상 결격사유 상태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남우 후보자의 상태는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 기재처럼 2025. 2. 말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를 사임하더라도 2025. 3. 31.자 당사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주)애자일소다 감사 중 최소 1곳의 직을 추가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장회사인 당사 사외이사 후보자로서도 법령상 결격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주주총회 시점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 폐기될 수 있습니다.

비단 당사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금번 주주총회 사안 이전에도, 이남우 후보자와 얼라인파트너스는 2024. 2. 22. (주)JB금융지주에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을 주주제안하였는데, 관련 공시자료 및 보도자료¹에 비추어, 그때에도 (주)에스비에스와 한솔홀딩스(주) 각 사외이사 재임 사항만 공개하고, (주)애자일소다 감사 재임 사항은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관련 보도자료상 (주)JB금융지주 사안에서는, "이남우 후보를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는데 지배구조 전문가가 거취를 밝히지 않고 사외이사[sic]가 선임될 경우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사임을 밝힌다는 것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¹ 예컨대 2024. 3. 28.자 딜사이트 ‘이사후보 자격 있다’--JB 금융·얼라인, 날 선 ‘공방’ 기사
(<https://dealsite.co.kr/articles/120291>)

위와 같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수개 회사의 이사·감사직 겸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전 (주)JB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시에도 이미 3개 회사 겸직 상태로써 결격사유가 존재함에도 (주)애자일소다 감사 재직 상황을 밝히지 않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남우 후보자에 대하여, 당사는 얼라인과 트너스와 이남우 후보자측 에게, (i)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법령상 결격사유가 주주총회 시점까지 명확히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ii) 이남우 후보자의 다수 회사 겸직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사실 해명 여하에 따라 당사는 관련 공정공시 내용의 정정을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가사 당사 주주총회 전까지 위 결격사유를 해소하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 수차례 이사 결격사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기업 거버넌스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자격 흠결 사유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이남우 후보자의 선임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 주주들께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권고합니다.

III.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의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남우 후보자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당사 IR홈페이지 2025. 2. 18. 공시 주주총회 참고자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겸임에 따른 이사의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 우려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30. 이사의 선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도 이를 명확히 의결권 반대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대다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30.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 제3편 제2장 및 제3장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6.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다만,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사유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 등 공시서류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2.2. 25.>

한편, 이남우 후보자는 현재 기준으로 약 2년 남짓 장기간 동안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 및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결격상태로 과도한 겸직을 유지 중이고, 그 전에 약 3년간 (주)에이비엘바이오, 한솔홀딩스(주) 2개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상태로 겸직을 유지하여 이들 수개 회사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격 사외이사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선임이 무효임에도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 받는 등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위 수개 회사들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회, 장기간에 걸쳐 법상 결격사유를 무시하고 여러 회사의 이사·감사직을 과도하게 겸직해 온 이남우 후보자의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적 태도를 감안할 때, 또다시 과도한 겸직 상태임이 분명한 당사 사외이사 겸임을 시도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 반대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IV. 얼라인파트너스 및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의 허위 자료 제출 및 허위 공시에 따른 법적 책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라인파트너스 및 이남우 후보자는 본건 주주 제안 과정에서 당사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책임까지 우려되는 결격사유 누락 제출을 하는 이남우 후보자의 태도 및 그러한 후보자 정보의 정확성·적법성 등 기본사항의 검증이 미흡한 상태로 후보제안을 하는 얼라인파트너스의 태도와 주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주제안 전체에 대해서 주주께서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당사 주주총회 진행 및 경영 의사결정, 주주가치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허위 공시 책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9호에 의해서 동법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56조 제3항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의 자진 정정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7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하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아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경고 또는 주의

얼라인파트너스의 본건 참고서류 공시가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주주총회에 관한 금번 공시 뿐만 아니라, (i) (주)에이비엘바이오, 한솔홀딩스(주), (주)애자일소다 3개사 겸임이 개시된 2020. 3. 31. (주)애자일소다 감사 선임시 및 (ii) 한솔홀딩스(주), (주)에스비에스, (주)애자일소다 3개 회사 겸임이 개시된 2023. 3. 24. (주)에스비에스의 사외이사 선임시의 이남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관련 공시의 적법성도 함께 조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당사에 대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313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와 이남우 후보자가 당사에 겸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당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얼라인파트너스와 이남우 후보자가 당사에 겸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고의 및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V. 주주께 드리는 말씀

이남우 후보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법상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2개 회사의 임원 겸직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의 이사·감사 겸직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부적격 상태로 해당 직을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 받음으로써 각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로 이어온 이력이 확인되는 후보자입니다. 또한 약 1년 전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남우

후보자를 (주)JB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주주제안하였을 때에도, 금번 당사 사례와 유사하게 3개사 이사·감사 재직 중인 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님들께 본건 주주 제안에 따른 이남우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여 주실 것을 명확히 권유합니다.

본건 참고서류 공시에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남우 후보자 선임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면서 “이남우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고위 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기업 거버넌스 및 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그의 선임은 코웨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우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법령 상 이사 결격사유를 숨기거나 적어도 이를 제대로 확인 및 판단도 하지 못하는데,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당사의 기업가치와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고,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충실한 의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i) 불과 약 1년전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후보 겸직 논란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후보자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 제안을 하면서 같은 쟁점에 대한 더 철저한 검증 내지 후보자의 현재 겸직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체 주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점, (ii)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배당률 90%의 주주제안을 시도하다 철회한 점 및 그 철회 사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주주제안 활동의 정확성·전문성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들의 주주제안 사항 일체에 대해 반대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별첨

이남우 후보자 겸직 관련 증빙

1. 얼라인파트너스 2025. 2. 18.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 교수	'24~현재 '20~현재 '23~25.02 '16~현재 '13~'16 '11~'12 '08~'11 '05~'07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한솔홀딩스(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주)에스비에스 사외이사, 감사위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노무라 금융투자 아시아태평양본부, 고객관리총괄대표 및 Managing Director DS 투자증권 대표 메릴린치인터내셔널엘엘씨증권 아시아태평양본부, 고객 관리 총괄 및 Managing Director 메릴린치인터내셔널엘엘씨증권 서울지점 한국 공동대표 및 Managing Director	해당 없음

2. 이남우 후보자 제출 겸직 현황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코웨이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5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장회사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재임회사 포함 5년) 제한 등 포함

추가적으로 동사 외에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회사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인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 재임사항

순번	해당인명	직책	임기종료일
1	한승훈임원(후) 이남우	이사	2026. 3. 29
2	(후) SBS*	이사	2025. 3. 24

2025 년 1 월 29 일

사외이사 후보자 이 남 우 (서명 또는 인)

* 임기 만료 전 2025년 2월말 사업 예정.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시 상장법인이 사외이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서류로 제출
- '집기일시주주총회 결과' 공시시 상장법인이 작성한 '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서' 제출의무 별도

3. 주식회사 애자일소다 2024. 3. 29. 공시 사업보고서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 년 12 월 31 일)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이남우	남	1964.01	감사	감사	비상근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졸업 -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3 년 8 개월	2026 년 03 월 30 일

4. 주식회사 애자일소다 2025. 2. 21. 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657397
등록번호	110111-5699024
상 호	주식회사 애자일소다
주식회사 애자일소다 (agilesoda, Inc.)	2020.03.31 변경 2020.04.14 등기

2024 년 04 월 30 일 사임	2024 년 05 월 08 일 등기
감사 싱가포르인 이남우 1964년 1월 25일생	
2020 년 03 월 31 일 취임	2020 년 04 월 14 일 등기
2023 년 03 월 31 일 중임	2023 년 04 월 12 일 등기

5. 주식회사 에이비엘바이오 2025. 2. 21. 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45660
등록번호	110111-5974020
상 호	에이비엘바이오 주식회사 (ABL BIO Inc.)
	에이비엘바이오 주식회사 (ABL Bio Inc.)
	2018.03.30 변경 2018.04.06 등기

감사 싱가포르국인 이남우 1964년 1월 25일생			
2017 년 10 월 18 일	취임	2017 년 10 월 19 일	등기
2019 년 03 월 21 일	사임	2019 년 03 월 22 일	등기
사외이사 싱가포르국인 이남우(RHEE NAM UH) 1964년 1월 25일생			
2019 년 03 월 21 일	취임	2019 년 03 월 22 일	등기
2022 년 03 월 30 일	중임	2022 년 03 월 31 일	등기
2023 년 03 월 10 일	사임	2023 년 03 월 10 일	등기
감사위원 싱가포르국인 이남우(RHEE NAM UH) 1964년 1월 25일생			
2019 년 03 월 21 일	취임	2019 년 03 월 22 일	등기
2022 년 03 월 30 일	중임	2022 년 03 월 31 일	등기
2023 년 03 월 10 일	사임	2023 년 03 월 10 일	등기